
- 국군의 날, 개천절, 한글날 -
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계획

2026. 9.



행 정 안 전 부
의정담당관실

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계획

I. 목적

- 국군의 날(10.1), 개천절(10.3), 한글날(10.9) 등 국가적으로 의미있는 기념일과 국경일을 맞이하여 온 국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
- 각종 경축·기념 행사에 국민의 참여를 권장하고,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자 함

II. 추진개요

□ 계 양 일 : 2026.10.1.(목) / 10.3.(토) / 10.9.(금)

□ 계양대상 : 관공서, 학교, 가정, 민간기업·단체, 주요 도로변 등

□ 계양시간

○ 매일 국기를 다는 경우

- 국가,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사: 평소대로 24시간 달기
- 각급학교 및 군부대의 주 계양대: 평소대로 낮에만 달기

○ 국경일 등 당일만 국기를 다는 경우

- 각 가정, 민간기업·단체 등: 10.1.(목)/10.3.(토)/10.9.(금), 07:00 ~ 18:00 달기
※ 「대한민국국기법」 제8조에 따라 매일·24시간 다는 것도 가능

○ 지방정부가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다는 경우

- 전일부터 당일까지 달되, 국기선양을 목적으로 일정구간을 정하여 연중 달 수 있음 ※ 「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」 제9조

※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 조절

◇ 심한 비·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 훼손 우려 시 달지 않으며, 일시적 악천후 시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기

Ⅲ. 공통 추진사항

□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

- (중앙행정기관·지방정부·공공기관) 소속 직원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태극기 달기 안내 및 참여 독려

- (지방정부) 자체 소식지, 아파트 구내방송 등을 통해 홍보

※ 아파트 등에서 방송할 때는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시간 방송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

- (정부매체) 각 기관 홈페이지, 대국민 주요 공공 웹·앱 등에 행안부 태극기 달기 안내 사이트* 링크 협조(9.21.~10.9.)

* 태극기 달기 안내 주소  <http://www.mois.go.kr/html/taegeukgi/10.html>
(배너 파일은 각 기관 홈페이지 사정 등에 따라 수정(문구 축소 등) 가능)

< 주요 공공 웹·앱 예시 >

- 정부24(행정안전부), 국민신문고(국민권익위원회), 홈택스(국세청)
- 우체국뱅킹 있다 예금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)
- 112긴급 신고앱(경찰청) - 워크넷(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) 등

□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 활용 안내 및 권고

- 국기 꽃이가 없는 주거 구조를 감안하여 창문 부착형 태극기 및 차량용 태극기 등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 달기가 가능함을 홍보

< 창문 부착형 태극기 >

- 세대별로 국기를 달 수 없는 상황이 있음을 고려, 창문에 부착하는 태극기도 가능함을 홍보
- 창밖에서 바라보았을 때 올바른 문양이 되도록 태극기 부착

< 차량용 태극기 달기 >

- 주거지에 태극기 달기가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차량용 태극기 등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 달기 안내
- 미니 태극기, 수기 태극기 등 다양한 규격의 태극기 활용 안내 및 권고

□ **게양된 국기 및 게양시설 점검·관리** ※ 붙임5 자체 점검표 참조

- 태극기가 오염·훼손된 상태(새똥, 먼지, 찢어짐 등)로 방치되어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로변, 행사장, 관광지, 경기장, 상가, 주택 등의 게양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및 조치
- 각종 행사에서 사용된 태극기는 행사 주최자에게 행사 후 일괄 수거하여 처리하도록 안내

□ **국기 달 때 안전사고 예방**

- 자녀와 함께 국기를 달거나 내릴 때 안전사고 발생 주의
-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
- 가로기를 달 때에는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게양구역을 선정하고 설치 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

□ **주택(공동주택) 등 각 가정에서 다는 방법**

-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(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 난간)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기

※ 주택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,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

- 세대별 국기 꽃이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 각 동 지상 출입구에 달기



Ⅳ. 기관별 추진사항

기관	추진사항
기관 공통	■ 기관·단체, 교육원, 학교 등의 각종 대회 시상품 또는 방문 기념품으로 국기 세트 증정 ◦ 공무원 포상 시 부상품, 신규 공무원 및 장기 국외훈련 대상자 등의 증정품으로 활용 ■ 각급 기관·단체 명의로 제작·배포하는 수첩·달력 등에 국기 수록 및 국기 다는 날 표시 ■ 홈페이지, 구내방송, 직원조회, 게시판 등을 활용하며, 소속 직원이 국기 달기운동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 ■ 산하기관·단체, 관련 기업 등에도 태극기 달기 전파
행정안전부	■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계획 수립 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한 홍보 협조 요청 ■ 반상회보, 홈페이지 등 태극기 달기 홍보자료 게재 ■ 우수 지방정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 ■ 태극기 달기 우수기관(개인) 포상 실시 ■ 각 기관 대상 태극기 달기 홍보
교육부	■ 초·중·고등학생에 대한 국기교육 실시 ◦ 각급학교 교과과정에 국기에 관한 내용 반영 ◦ 태극기의 유래, 게양방법, 국기에 대한 예절 교육 ◦ 그림 그리기, 글짓기 대회, 태극기 달기 소감문 발표 등 ◦ 부모님과 함께 태극기 달기 참여 지도 ■ 초등학교 입학생 태극기 보급 및 교육 ■ 태극기 달기 「가정통신문」 발송 등
과학기술 정보통신부	■ 우체국 쇼핑몰(mall.epost.go.kr) 및 우체국 판매상품 카탈로그를 통한 태극기 판매 홍보

기관	추진사항
국가보훈부	■ 보훈단체 등을 통한 나라사랑 캠페인 전개 ◦ 태극기 게양운동, 거리 조성, 현충원 주변 상시게양 등 ■ 태극기 군집기, 태극기 나무 등 태극기 선양 사업 추진
문화체육 관광부	■ 정부 보유 매체를 통한 국기게양 운동 홍보 ◦ 정부포털, 공직자 통합 메일, SNS 등 ■ 옥외 전광판 등을 이용한 태극기 달기 홍보 ■ 문화CI, 관광CI에 태극기 문양 활용 연계 ◦ 국가상징 문양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·보급 등 ■ 각급 관광호텔의 매일·24시간 국기 게양 권장
산업통상부	■ 백화점, 마트 등 대형유통시설에 상설 국기 판매대 설치 및 인터넷 판매소 확충 ■ 기업체 사보, 신문광고 등에 태극기 달기 홍보문안 삽입 권장 ■ 기업체 고객 사은품·기념품으로 가정용 태극기 증정 권장 ■ 생활용품, 학용품 등에 태극기 및 국가상징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 개발
국토교통부	■ 공동주택 국기 꽃이 설치 관련 제도 개선 및 홍보 ■ 철도·전철 안내방송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 전광판 등을 통한 태극기 달기 홍보 ■ 국제공항, 터미널, 역,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국기 게양
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	■ 각 언론사(공중파 및 종합편성채널) 대상 국기게양 홍보 요청 ◦ TV 방송진행자 코멘트 협조 - 국기게양일 전날 저녁 및 당일 아침 뉴스 및 일기예보 시간 ◦ TV 자막방송 - 게양일 전날 아침·저녁 및 당일 아침 방송시간(수시)

기관	추진사항
지방정부	■ 민원실에 국기판매대 설치·운영 및 적극적 안내 ◦ 창문부착형 태극기 및 국기꽃이 병행 판매 ■ 국경일 직전 가정용 태극기 거리판매, SNS 홍보 ■ 각종 대회 시상품이나 행사기념품, 혼인신고 또는 전입 신고 시, 기념품으로 증정 ◦ 착한가격 업소 등에서 국기세트 선물 증정 권장 ■ 국기꽃이가 없는 가구현황 조사 및 개선 대책 마련 ■ 건축물 신축 시 국기꽃이 설치 안내 ■ 주된 국기게양대가 없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에 국기 게양대 설치 계도 ■ 택시·버스 등 차량에 국기 달기 운동 전개 ■ 지역방송매체 및 지하철·버스 내 홍보방송 실시 ■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 달기, 대형건물에 대형국기 달기 ■ 대형마트, 편의점 등 상업시설에 국기판매 권장 ■ 모든 홍보 기능을 활용, 국기 달기 홍보 강화 ◦ 국기게양 모범아파트 및 모범거리 조성, 협업 캠페인 ◦ 통(반)·리장 등 일선 조직에 협조 요청, 각 가정에 국기 달기 홍보 ◦ 아파트단지·상가 등에 홍보 유인물 배포, 게시판 부착, 안내방송 실시 ◦ 아파트 관리사무소, 경로당 등에 대형 태극기 게양 ◦ 민·관협력 국기 달기 캠페인 등 활동 전개

붙임1.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배너이미지



붙임2.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홍보 자료

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.

- 다가오는 10월 1일은 제78주년 국군의 날, 10월 3일은 제4358주년 개천절, 10월 9일은 580돌 한글날입니다.

- 우리 모두 나라사랑 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.
- 각 가정의 태극기 게양 시간은 07:00부터 18:00까지입니다.

※ 태극기는 「대한민국국기법」 제8조에 따라 매일·24시간 달 수도 있습니다.

- 심한 비.바람(악천후)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,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.

《 가정에서의 태극기 다는 위치 》

-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(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)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며, 세대별 국기꽃이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각 동 지상 출입구에 답니다.

※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,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태극기를 창문 또는 현관문 등에 부착하여 다는 것도 가능

※ 자녀와 함께 달 경우,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

※ 아파트 등 고층건물은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강풍 등으로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

《 태극기의 구입 》

- 지방정부 민원실(시.군.구청 및 읍.면.동 주민센터 등), 우체국 쇼핑몰(mall.epost.go.kr),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.

- 오염.훼손된 태극기는 지방정부의 민원실,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.

※ 홍보 협조 사항

국기게양일 전날·당일 아침뉴스, 일기예보 등 진행자 태극기 달기 안내, 수시 자막홍보 등 요청

붙임3. 태극기 달기 홍보 방송(안) 참고 자료

☐ 자막표출 문안(안)

국군의 날(10.1.), 개천절(10.3.), 한글날(10.9.)을 맞이하여
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.

☐ 각급청사 및 공동주택 안내방송(안)

< 예시 : 9.30.(수), 10.2.(금), 10.8.(목) 10:00, 17:00 / 각 2회 방송 >

구 분	방송시간	방송문안(예)
국군의 날 10.1.(목)	9.30.(수) 10:00	○○○○○에서 알려드립니다. 다가오는 10월 1일은 제78주년 국군의 날입니다.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.
	9.30.(수) 17:00	
개천절 10.3.(토)	10.2.(금) 10:00	○○○○○에서 알려드립니다. 다가오는 10월 3일은 제4358주년 개천절입니다.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.
	10.2.(금) 17:00	
한글날 10.9.(금)	10.8.(목) 10:00	○○○○○에서 알려드립니다. 다가오는 10월 9일은 오백여든돌 한글날입니다.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.
	10.8.(목) 17:00	

붙임4. 가로기 게양 방법 참고 자료

□ 국기의 깃면을 늘여 벽면에 게양 시(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4조별표 4)



※ 건물 벽면 등에 깃대, 깃봉 및 국기꽃이 없이 게양하는 방법

□ 깃대형, 가로기 게양 시(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규정 제9조 및 제11조)

깃대형 게양 방법(제11조제4항)		가로기 게양 방법(제9조제8항 관련 별표2)	
 올바른 게양	 잘못된 게양	 경사진 형태 (V자형)	 깃면을 늘여다는 형태 (배너형)
※ 앞에서 단상(집무탁상)을 바라보아 단상의 왼쪽(집무탁상 위 왼쪽)에 위치하도록 하고,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반드시 오른쪽으로 오도록 하여 늘어뜨림		1. 국기만 게양할 때(태극기를 대칭하여 2개를 게양) 감괘(☰)가 바깥쪽 위로 가야 함	태극문양의 빨간색이 바깥쪽으로 가고, 건괘(☷)가 바깥쪽 위로 가야 함

※ 「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」 제2조(정의) 2. “가로기”란 가로(街(거리가) 路(길로))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.

※ 도로변에 게양하는 별표 2 방법(2개 국기 대칭 게양)에 따라서 게양

붙임5. 국기 및 게양시설 자체 점검표

구분	주요 점검내용	비고
■ 게양대 ¹⁾	•국기 게양대가 설치되었는지?	
	•국기 게양대 설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?	
	•청사 주게양대 야간 조명시설은 설치되었는지? (국기를 연중 게양하는 장소)	
■ 국기 ²⁾	•국기가 순서에 맞게 게양되어 있는지?	
	•게양된 국기가 오염·훼손되지는 않았는지?	
	•게양 유형별로 게양 위치에 맞게 게양되었는지?	
■ 깃봉 ³⁾	•깃봉 모양 및 색깔 등 규격을 준수하고 있는지?	
	•깃봉이 변색·훼손되지는 않았는지?	
■ 판매대 ※지방정부 해당	•국기 판매대를 운영하고 있는지?	
	•판매하고 있는 국기는 국산인지?	
■ 수거함 ⁴⁾ ※지방정부 해당	•국기 수거함을 설치·운영하고 있는지?	
	•국기 수거함이 불량은 아닌지?	
■ 가로기게양 ⁵⁾ ※지방정부 해당	•가로기 게양 방법을 준수하였는지?	
	•가로기 게양 방법이 미준수 및 국기 오염·훼손 되지는 않았는지?	

1) 국기게양대 : 설치, 미설치, 설치 기준* 등 준수

*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(2개 이상)와 같이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함(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, '08.7.17. 개정 이후 (재)설치 게양대)

2) 국기 상태 : 양호, 불량(국기 미게양, 깃면 오염·훼손, 게양순서 및 위치 오류 등)

3) 국기 깃봉 : 규격 준수*, 양호, 불량(민무늬 봉오리, 변색, 직사각형 받침, 파손 등)

* 모양: 무궁화 봉오리 / 색깔: 황금색 / 받침: 사다리꼴(대한민국국기법 제7조 제4항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3)

4) 국기 수거함 : 설치, 미설치, 양호, 불량(쓰레기분리수거통, 종이상자, 음식물쓰레기통 등)

5) 가로기게양 : 양호, 불량(가로기 게양 방법(제9조제8항 관련 별표2) 준수, 국기 오염·훼손 등)